

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미급 동물보호법 관련 단속점검 분야 채용 공고

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경제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21.

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임용분야	임용등급	임용인원	임용기간	근무 예정부서	직무내용
동물보호 법 관련 단속·점 검업무	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	1	2026.10.01. ~ 2028.2.29.	지 역 경제과	- 동물보호법 관련 민원처리 -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, 점검, 과태료 부과 업무 - 유실·유기 및 사육포기 동물 관리 - 야생화된 유기견(들개) 관리 - 공공일자리 관리 업무 - 기타 동물보호 업무 지원

※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나 인력수요, 근무실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
※ 단속점검 업무는 주35시간 범위 내에서 하도 단속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 가능함

2. 법령 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
-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

3. 응시자격요건

- 공통요건 (※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 - 지역·연령·성별 : 제한 없음 (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)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○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

구분	응시자격요건
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	○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▶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(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17조 제5항) ▶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－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동물 관련 단속 업무 경력 ○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▶ 예시) 한국펫고등학교(반려동물매니지먼트과), 연암대학교(동물보호학과) 등

※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

4.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- 근무시간 : 주 35시간(1일 7시간 근무) ※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
- 근무부서 : 강남구청 지역경제과
- 보수수준 : 기본급 25,325천원 (월2,110,410원) + 기타수당
※ 기타수당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가. 시험일정

- 시험일정(안)

서류전형(1차)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	면접 시험(2차)	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최종 합격자 발표
2026. 9. 8.(화) 예정	2026. 9. 14.(월) 14:00 예정	2026. 9. 15.(화) 예정	2026. 9. 28.(월) 예정

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, 변동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-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 9. 2.(수) ~ 9. 4.(금) 09시 ~ 18시 [3일간]
- 접수장소 :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동물관리팀(강남구 학동로426, 본관4층)
- 접수방법 : 직접 방문접수(신분증 지참) ※ 우편접수 불가

나. 시험방법

- (1차 시험) 서류전형 :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
-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
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(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」 제15조제3항)

- (2차 시험) 면접시험 :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능력 및 적격성 심사
-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
○ 최종합격자 발표 :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7항)

※ 면접 응시자가 요청할 경우, 평가결과를 종합한 응시자 본인의 상·중·하 개수 공개
(단, 면접위원별·평정요소별 개수는 비공개) * 국민권익위원회 권고(의안번호:제2023-225호)

6. 제출서류

○ 응시원서(별지 제1호 서식) 1부

- 응시수수료 : 5,000원(강남구청 1층 민원여권과 5번 창구에서 수입증지 구입 후 부착)

※ 근무 시간 내(09:00~18:00) 인증 가능, 수입증지 미부착 응시원서는 무효처리함

※ 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제출 시 수입증지 대신 해당증명서 첨부

○ 이력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 등 자료 제출

○ 자기소개서(별지 제3호 서식) 1부

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제4호 서식) 1부

○ 직무수행계획서(별지 제5호 서식) 1부

○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(별지 제6호 서식) 1부

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별지 제7호 서식) 또는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
○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○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)
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(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 업무를 반드시 기재)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
○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

- 자격증은 사본을 제출(원본 지참 확인)
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,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
- ※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. 기타(유의) 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강남구 지역경제과 동물관리팀(☎ 02-3423-5517)